

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2004.7.20.(화)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4년 7월 7일
- 회부일자 : 2004년 7월 7일

다. 상정일자 : 제2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

- 2004. 7. 15 :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심사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김 재 욱)

가. 제안이유

-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“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 담당기구 설치지침”에 의거 기획관리실에 설치된 「도정혁신기획단」을 「혁신분권담당관」으로 전환하고,
-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행정부지사 직속 「총무과」를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여 실국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기획관리실장 분장사무 조정
 - “도정혁신기획단 운영에 관한 사항” 을
 - “행정혁신,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등에 관한 사항” 으로 조정
- 자치행정국장 분장사무 조정
 - “각종 의전, 행사, 보안, 문서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” 신설
 - “공무원인사, 교육고시, 복무 및 후생에 관한 사항” 신설

3. 검토보고 요지

(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 상 만)

○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이는 지방분권특별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의 시행에 따른 행정혁신,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“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담당기구 설치지침”에 따라,

우리 도에서는 제222회 임시회에서 승인한 한시기구인 기획관리실의 도정혁신기획단을 행정혁신,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등 국정목표의 지방적 구현을 위해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인 혁신분권담당관으로 전환 설치하고,

자치행정국의 분장사무에 “각종 의전, 행사, 보안, 문서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”과 “공무원 인사, 교육고시, 복무 및 후생에 관한 사항”을 추가하여, 현재 행정부지사를 보좌하는 총무과를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려는 것으로서,

도정혁신기획단을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대로
혁신분권담당관으로 전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

안 제6조제10호 “행정혁신,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등에 관한
사항”을 신설하여 한시기구로 혁신분권담당관으로 전환하면서
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제4항에서
정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사유와,

※ 제6조제4항 “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 내에서 그
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”

총무과는 제163회 임시회(1999.8.24)에서 업무의 특수성이 있기
때문에 타 실·국에 두지 않고 자치행정국에서 행정부지사
직속으로 두었으며,

제222회 임시회(2004.2.3)에서 인사업무의 독립성과 투명성
확보를 위하여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는 것을 승인하지
않았으나,

우리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14개 시도가 총무과를 자치행정국
또는 행정(관리)국 소관으로 두고 있어,

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총무과를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려는
필요성은 인정되나 지난 제222회 임시회에서 승인하지 않은
점과 새로운 여건변화 여부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
필요하다고 사료됨.

※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

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제4항에서
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

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동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는
실·국·본부와 과·담당관으로 정한 규정과
동 규정 제7조제1항에서 실·국·본부의 설치와 그분장사무는
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,
동 규정 제9조 과·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
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논란의
소지는 있으나,

행정기구는 실·국·본부와 과·담당관을 의미하고,
동규정 제19조제6항 “한시정원의 정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
조례로 정하고, 직급별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
정한다”라고 규정한 것을 볼 때 ,

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“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”라고
규정하지 않고 “조례로 정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어,
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동 규정 제6조제4항에 정한바와 같이
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.

※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

“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
되, 시·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
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, -----”

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4항

“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
정한다”

동 규정 제7조제1항

“시·도 본청에 두는 실·국·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당해
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----- ”

동 규정 제9조

“시·도 본청에 두는 과·담당관의 설치 및 그사무본장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”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수정안요지

가. 수정이유

- 한시기구인 기획관리실의 혁신분권담당관실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.

나. 수정 주요골자

- 안 부칙에 한시기구인 기획관리실의 혁신분권담당관실의 존속기한을 2007. 6. 30까지로 명시함.

7. 심 사 결 과 : 수정안 가결

8. 소수 의견 요지 : “없음”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- 충청북도행정기구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제안년월일 : 2004. 7. 15.

제안자 : 정상혁 의원외

1. 수정이유

- 한시기구인 기획관리실의 혁신분권담당관실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안 부칙에 한시기구인 기획관리실의 혁신분권담당관실의 존속기한을 2007. 6. 30까지로 명시함.

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기구) 기획관리실 “혁신분권담당관”의 존속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

조 문 대 비 표

개 정 안	수 정 안
<p data-bbox="229 568 283 600">부칙</p> <p data-bbox="162 672 595 705"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<p data-bbox="767 568 821 600">부칙</p> <p data-bbox="700 672 1184 755"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 data-bbox="700 774 1224 913">제2조(한시기구) 기획관리실 “혁신분권담당관”의 존속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</p>

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0. 행정혁신,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등에 관한 사항

제7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종전 제1호 내지 제9호를 제3호 내지 제11호로 한다.

1. 각종 의전, 행사, 보안, 문서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
2. 공무원인사, 교육고시, 복무 및 후생에 관한 사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기구) 기획관리실 “혁신분권담당관”의 존속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

신 구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기획관리실) 기획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</p> <p>1. ~ 9. (생략)</p> <p>10. <u>도정혁신기획단 운영에 관한 사항</u></p>	<p>제6조(기획관리실)</p> <p>.....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<u>행정혁신,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등에 관한 사항</u></p>
<p>제7조(자치행정국)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1. ~ 9. (생략)</p>	<p>제7조(자치행정국)</p> <p>.....</p> <p>1. <u>각종 의전, 행사, 보안, 문서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</u></p> <p>2. <u>공무원인사, 교육고시, 복무 및 후생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. ~ 11. (생략)</p>

관련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법

제102조 (행정기구)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, 시·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, 시·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·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행정기구의 설치·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

제7조 (실·국·본부등 기구의 설치) ①시·도 본청에 두는 실·국·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실·국·본부 및 과·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·국·본부의 개편, 명칭변경 및 사무분장을 함에 있어서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